

#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1월 16일 한선재 의원 등 9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한선재 의원)

###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구성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청회 개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전담부서의 설치를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을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기본소양 교육, 생활정보 제공, 생활 및 법률상담, 자활지원, 아동보육 및 교육, 빈곤 및 위기 아동 과 청소년 지원 등)을 규정 (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26조)
-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대한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 (안 제27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하였는지?	○ 현재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가 보다 진취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봄.
○ 자녀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에 대한 교류의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 다문화 시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조례제정을 계기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살려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기관별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상 한선재 의원)
○ 조례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한데?	○ 다문화 지원 시책을 세밀하게 판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노력하겠음.
○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문제를 검토해 보았는가?	○ 예산이 갑작스럽게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임.
○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은?	○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필요한 조례로 판단함. (이상 가정복지과장)

####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512호
의결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안년월일 : 2009. 12. 16.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다문화 가족의 정의 중 보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에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

## 2. 수정 주요골자

- 다문화가족의 정의 중 보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삭제함.(안 제2조 1호 다목)
-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에 연임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 4항)

##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1호 다목을 삭제한다.

안 제10조 4항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u>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u></p> <p>제10조(구성) ④ <u>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u> <u>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u>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6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u>다. (삭 제)</u></p> <p>제10조(구성) ④ <u>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u> <u>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u> <u>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u> <u>기간으로 한다.</u></p>

#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

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부천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청회 개최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매년 부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부천지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부천시 보건소장, 부천교육청 관련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명
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또는 기관·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장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제16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시장은 부천시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소양 교육) ①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부천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기술 습득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정보 제공)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부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국어로 편집된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 사례, 부천시 보육시설·기관 등의 소개, 한국문

화·지역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 책자 및 정보지를 발간·배포할 수 있다.

제19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 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응 교육 및 자활지원) ① 시장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위하여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의 자활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역·번역사 양성교육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취업전담 지원 기관 및 정부기관·지사체 간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
3. 출신국별 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 개발
5. 결혼이민자 등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실시

제21조(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의료 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 하도록 의견진술, 사실 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결혼이민자 및 자녀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다문화가족 건강증진)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사업
2. 다문화가족 보건소 등록관리 및 맞춤형 방문 건강 서비스
3.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을 위한 영양건강교육
4.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대상 산전·산후 돌봄 가정 방문 서비스
5. 다문화가족 대상 다국어로 발간된 예방접종 관련 필수 정보 책자 제공으로 자녀 예방접종 강화

제23조(아동보육·교육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보육·교육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부(父) 또는 모(母)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보육·교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재지원과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공립 보육시설 등 부천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다문화 가족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내 보육시설의 일반아동과 보육교사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과 영·유아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언어·학습·정서 발달 및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학습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 지역아동 센터’지정·운영
2.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별 교육강사 양성 및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 시설에 강사과건을 통한 이중 언어 프로그램 운영지원
4. 아동·청소년시설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 캠프,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다문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제25조(빈곤·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빈곤과 위기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빈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집중 사례관리
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단체를 통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상담 서비스

3.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관련 아동·청소년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4. 이혼, 가족해체 등 고위험 상황 다문화 아동·청소년 전담보호를 위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전담 동반자 육성

## 제5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6조(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시장은 부천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 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가 위탁운영 중인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로 본다.

[수정안 포함]

##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부천시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부천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청회 개최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매년 부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부천시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부천시 보건소장, 부천교육청 관련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명
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또는 기관·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장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제16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시장은 부천시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소양 교육) ①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부천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교육, 기술습득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정보 제공)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부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국어로 편집된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 사례, 부천시 보육시설·기관 등의 소개, 한국 문화·지역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 책자 및 정보지를 발간·배포할 수 있다.

제19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 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응 교육 및 자활지원) ① 시장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위하여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의 자활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역·번역사 양성교육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취업전담 지원 기관 및 정부기관·지자체 간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
3. 출신국별 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 활동 개발

### 5. 결혼이민자 등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 지원 실시

- 제21조(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의료 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 하도록 의견진술, 사실 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결혼이민자 및 자녀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다문화가족 건강증진)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생활 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사업
2. 다문화가족 보건소 등록관리 및 맞춤형 방문 건강 서비스
3.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을 위한 영양·건강교육
4.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대상 산전·산후 돌봄 가정 방문 서비스
5. 다문화가족 대상 다국어로 발간된 예방접종 관련 필수 정보책자 제공으로 자녀 예방접종 강화

제23조(아동보육·교육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보육·교육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부(父) 또는 모(母)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보육·교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재지원과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공립 보육시설 등 부천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다문화 가족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내 보육시설의 일반아동과 보육교사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과 영·유아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언어·학습·정서 발달 및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학습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 지역아동센터’지정·운영
2.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별 교육강사 양성 및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 시설에 강사파견을 통한 이중 언어 프로그램 운영지원
4. 아동·청소년시설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 캠프,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다문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제25조(빈곤·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빈곤과 위기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빈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집중 사례관리
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단체를 통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상담 서비스

3.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관련 아동·청소년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4. 이혼, 가족해체 등 고위험 상황 다문화 아동·청소년 전담보호를 위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전담 동반자 육성

## 제5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6조(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시장은 부천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 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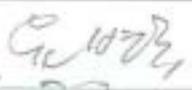
제2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가 위탁운영 중인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로 본다.

찬성의원 서명 명부

의원성명	서명·날인	의원성명	서명·날인
한운석			
유종혁			
김태원			
윤서강			
이환리			
박종중			
김재성			
신석필			